

제 호	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관증	
소 속 :	사진 (2.5cm×3cm)
직위(직명) :	
성 명 :	
기 간 :	
위 사람은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.	
년 월 일	
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	직인

55mm×80mm [백상지(120g/㎡) 또는 백상지(80g/㎡)]